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6.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352호로 2021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 조례 및 지침과 상이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조문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 다. 조문 정비 및 별표 1, 2 삭제(안 제2조의2, 안 제4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1. 4. 22. ~ 5. 12./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 조례 및 지침과 상이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주요 내용으로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 정의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였음.
- 안 제2조의2에서는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를 명시한 별표1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을 명시한 조문을 정비하여 별표2를 삭제하였음.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과 관련 지침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자료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